

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

議案 番號	4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0.

제 출 자 : 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- 이조례는 1983. 9. 1 부터 전기, 상·하수도, 도시가스요금, 폐기물수집수수료, TV 수신료등을 통합과징하기 위하여 1983. 8. 22 대전시 사용료수수료 과징업무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제정되고 1989. 12. 13 대전직할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로 전면 개정되었으나
- 1994. 10. 1 부터 통합공과금을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되고 공과금 해당기관별로 과징업무를 실시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2. 參考事項

- 통합공과금분리 세부추진지침(내무부) - '94. 7. 29
- 관련조례개정(상·하수도조례등) - '94. 10.
- 통합공과금과징 위·수탁계약 해지(시장↔위탁기관) - '94. 9. 30
- 시·구 공과금직제 및 정원규칙 폐지 - '94. 10. 1
- 자원이관 및 인력재배치(한전, 상수도, 구청등) - '94. 10.
- 통합공과금특별회계 결산 및 정산 - '94. 12.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

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

審 查 報 告

1994年 11月8日

內 務 委 員 會

I. 審 查 經 過

1. 提出日字 및 提案者 : 1994年 10月 29日 大田直轄市長
2. 回 附 日 字 : 1994年 10月 31日
3. 上 程 日 字 : 第36回 大田直轄市議會 (臨時會)
第1次 內務委員會 (1994. 11. 8)
上程, 審議, 原案可決

II. 提案說明要旨 (提案說明者 : 內務局長)

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 - 이 條例는 1983. 9. 1부터 전기, 상·하수도, 도시가스요금, 폐기물수집수수료, TV수신료등을 統合課徵하기 위하여 1983. 8. 22 大田市 使用料手受料 課徵業務 特別會計設置條例로 制定되고 1989. 12. 13 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로 全面 改正되었으나
 - 1994. 10. 1부터 統合公課金を 分離한다는 政府方針이 確定되고 公課金 該當機關別로 課徵業務를 實施함에 따라 本 條例를 廢止코자 함.

Ⅲ. 專門委員 檢討要旨 (專門委員 : 鄭鎮喆)

本 案件은 지난 83年 8月부터 電氣, 上下水道등 6個 事業의 手數料등을 統合課徵하기 위하여 別途의 特別會計를 設置 運營하여 왔으나, 政府計劃에 따라 今年 10月 1日부터 統合公課金を 分離하고 現在 該當機關別로 課徵業務를 實施하고 있는바, 本 條例의 존치 必要性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廢止하려는 것임.

Ⅳ. 討 論 要 旨 : 省 略

Ⅴ. 質 疑 및 答 辯 要 旨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조례폐지 사유	○ 한전, KBS에서 운영자금 부담 않고 자체 징수하겠다는 계획에 의함.
○ 조례폐지전 시민공청회나 중앙에 건의했었는지	○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중앙에는 건의했음.
○ 인력조정상 문제점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은 없었는지	○ 없었음.
○ 상하수도 인력의 잔여인력 소화는	○ 잔여인력에 대하여는 구와 동에 과원으로 배치했음.

Ⅵ. 審 查 結 果 : 原 案 可 決